



1/1/2024–12/31/2024 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

New York City

대규모 고용주(직원 11 명 이상)

최저 임금 **\$16.0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00

소규모 고용주(직원 10 명 이하)

최저 임금 **\$16.0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00

Long Island 및
Westchester County최저 임금 **\$16.0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00

그 외 나머지 뉴욕 주

최저 임금 **\$15.0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2.50

질문이 있거나,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불만을 제기하려는 경우

전화: (518) 457-9000 | (888) 4-NYSDOL (888-469-7365) | 711 TTY/TDD

임금을 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**공제액 및 수당**:

- **식사와 숙소** –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제공한 식사와 숙소에 한해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적용 금액과 요건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임금 규정 및 요약에 나와 있습니다.

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기타 규정:

- **안전** – 고용주는 지역, 주 및 연방 정부의 건강 및 안전 법률과 화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화재 비상구는 업무 시간 중에는 잠겨있지 않아야 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.
- **가내수공업** – 공장에서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가면 안됩니다. 어떠한 일거리도 집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배분되어서는 안됩니다.
- **등록** – 고용주는 노동부(Department of Labor)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고용주는 매년 발급되는 등록증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.

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**추가 임금**:

- **초과 근무 수당** – 주당 40 시간(상주 직원의 경우 44 시간)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임금의 1/2 배이어야 합니다(상기에 명시된 초과 근무 수당 미만일 수 없음).
예와: 주급이 최저 임금의 75 배 이상인 봉급(일정급여)을 지급 받는 전문직 근로자 또는 임원 및 관리 직원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
- **출근 수당** – 근무일정대로 출근했는데 고용주에 의해 조기 퇴근이 지시되었을 경우, 해당 조기 퇴근일에 대해 최저 임금이 적용된 시간외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**총 근무지 체류 시간** – 하루 근로 시간이 10 시간이 넘을 경우, 그 날에 대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저 임금 1 시간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.
- **유니폼 관리** – 근로자가 자신의 유니폼을 직접 세탁할 경우, 추가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급 금액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